

02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추진부서 파주시 징수과 ☎ 031-940-4268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는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및 본세의 분납허가의 세제 지원이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체납징수특례 신설의 제안 필요성

개선배경

[피해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세 차원의 지원이 없어 체납자의 경제 재기에 어려움이 있음.

※ 영세개인체납자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



개선내용

개선전

→ 지방세에는 조특법에서와 같이 영세개인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남.

개선후

→ 영세개인체납자 회생 의지 고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후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법적근거 마련



상급기관 개선과제 제안

- '20.02.07. 규제개선과제 제안 제출
- '20.02.18. 지방세입제도개선 토론회 제안
- '20.02.27.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안건 제출
- '20.04.13. 경제위기대응 현장지원을 위한 설문제안
- '20.10.23.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드라이포트 혁신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 |
|-----|---|
| 5월 | 동아리 발대식, 동아리 연구모임 5회(2020년 7,9,10,11,12월) |
| 7월 | 체납액징수특례 연구 분야별 발표 |
| 10월 | 지방세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연구과제 발표 |

입법진행 경과

- '20.11.13. 파주시 제안 수용, 행안부 제출(경기도 → 행안부)
- '21.01.13. 경기도지사 중대본회의 통한 중앙부처 건의
- '21.02.02. 의원입법발의
- '21.03.23. 국회 본회의 통과
- '21.04.13.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신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개선효과

- 상급기관에 「체납액징수특례」관련법 제정을 '전국 최초' 건의하여 세제지원 활성화
 -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본세의 장기적 분할납부의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지원
- 경제재기의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여



보도자료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지원안' 정부에 건의

송고시간 | 2020-12-07 16:29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0월 경기도시창·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만찬으로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도자료, 2020.12.7.子 연합뉴스 외 다수〉

'파주시가 시작하면 법이 된다'...市, 최초 제안 제납액 특례 4월 시행

제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국회 통과
지방세 등야리 제안→최종환 시장 추진

등록 2021-04-13 오후 1:03:08
수정 2021-04-13 오후 1:03:06
별첨 3/3쪽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정에 근무하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한 혁신동마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체납액 징수특례가 국회를 통과, 4월부터 시행된다.

1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혁신동마리 '드라이포트'가 구체화하고 지난해 10월 최종 원 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의견을 낸 뒤 경기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제안한 '제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세제제한 차원에 제도다.

〈보도자료, 2021.4.12.子 이데일리〉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



파주시 세정과 박세용 031-940-4218

파주시 지방세 연구모임인 드라이포트는 지방세체납을 다루는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지난 한 해 1년여의 시간 동안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결국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에 시행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노력을 경진대회에 나가 발표하고 입상할 수 있게 되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의욕이 충만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혁신」 단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무한 긍정이고 창의적이며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조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내부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체납액 징수특례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을 때 무시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로 거의 호응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법률이 개정되는 이번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시대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성격상 신중해야겠지만, 의견 개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원 개인들의 삶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우리와 같이 기존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을 또 다른 드라이포트팀을 응원합니다.